

# 재난관리론

해설: 구방제

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류 대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②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③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 ④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④ 사회재난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건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건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A등급 - 연 1회 이상
- ② B등급 - 연 1회 이상
- ③ C등급 - 반기별 1회 이상
- ④ D등급 - 분기별 1회 이상

③ A, B, 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 3. 재난이 상호작용성을 지니기 때문에 재난의 발발은 대체로 단일한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재난의 특성은?

- ① 누적성
- ② 불확실성
- ③ 복잡성
- ④ 인지성

③ 복잡성

문 4. 가연물에 따른 화재분류에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 등급은?

- ① A급화재
- ② B급화재
- ③ C급화재
- ④ D급화재

④ 금속화재는 D급화재이다.

A급화재 = 일반화재: 일반가연물, 종이, 목재, 면화류 / 물로 소화 재를 남김

B급화재 = 유류화재: 유류 및 알코올 / 재를 남기지 않음

C급화재 = 전기화재: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시설 화재

K급화재 = 주방화재: 식용유,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물로 소화금지

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 ②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국무총리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① 대통령 소속 X -> 국무총리 소속 <재난기본법 제9조>
- ②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안전부 장관 X ->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재난기본법, 제9조, 제10조>
- ③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기본법 제10조의 3>

문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의사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 ② 의사가 제1급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 ③ 의사가 제2급감염병 환자의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④ 의사가 진료하던 제3급감염병 환자가 해당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①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는 재난의 수습활동을 위하여 비축·관리하여야 할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된다.
- ② 시·도지사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이 소유하는 장비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략>

문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삼산화 크로뮴
- ② 질소산화물
- ③ 암모니아
- ④ 휘발성유기화합물

① 크로뮴의 삼산화물. 독성이 강한 짙은 붉은색의 바늘 모양 결정으로, 다이크로뮴산 염의 찬 포화 용액에 진한 황산을 넣어서 만든다. 강한 산화제로 유기 합성에 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는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심의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포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0.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 ②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③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고시
- ④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재난기본법 제19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고시 : 재난기본법 제33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재난기본법 제16조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문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는?

- ①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 ② 지진방재에 관한 응급조치
- ③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④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③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①②④은 지역재난대책본부장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 유지
-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문 12. 재난관리방식 중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과도한 부담 가능성
- ㄴ. 정보전달의 일원화
- ㄷ. 전문성 제고 용이
- ㄹ. 특정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 ㅁ. 자원 마련과 배분의 간소함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② 통합관리 방식의 특징이다.  
ㄷ. 전문성 제고에 불리 ㄹ. 보편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ㄷ, ㄹ은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이다.

**<분산관리 방식의 특징>**  
ㄱ. 부담을 분담(경감) ㄴ. 정보전달의 다원화(복잡화) ㄷ. 전문성 제고 용이 ㄹ. 특정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ㅁ. 자원 마련과 배분의 복잡함

문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 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 ㄷ.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④ 재난원인조사를 하는 경우는 재난기본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정도의 재난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야 하며 재난주관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당연히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문 1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중 대비단계의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③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 ④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시행규칙 참고

시행규칙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단계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 15. 재난경감방법 중 구조적 경감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배수시설 설치
- ② 방재기준 설정
- ③ 하천제방 설치
- ④ 방수시설 보강

② 비구조적 경감방법이다.

<비구조적 경감방법>

1. 취약시설 지정, 점검, 유지관리
2. 종업원(직원, 종사자) 교육, 훈련, 전문기술 습득
3. 제도적 보완

<구조적 경감방법>

1. 배수, 방수시설의 설치 보강
2. 내진대책, 시설의 취약요인 보강, 비상발전설비 설치 등

문 16. 국내 주요 대형재난을 발생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아현동 가스폭발
- (나) 태풍 매미
- (다) 태풍 루사
- (라)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 ① (가)→(나)→(다)→(라)
- ② (가)→(라)→(다)→(나)
- ③ (라)→(가)→(나)→(다)
- ④ (라)→(가)→(다)→(나)

② (가)→(라)→(다)→(나)

(가) **아현동** 가스폭발(아현동 도시가스폭발) : 1994년 12월 7일

(라)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 1999년 6월 30일

(다) 태풍 **루사** : 2002년 8월 30일 ~ 9월 1일

(나) 태풍 **매미** : 2003년 9월 12일 ~ 13일

<주요 태풍순서>

사라(1959) → 셀마(1987) → 페이(1995) → 자니스(1995) → 안니(1998) → 올가(1999) → 루사(2002) → 매미(2003) → 에위니아(2006) → 볼라벤-덴빈(2012) → 산바(2012) → 프란시스코, 타파미탁(2019) → 바비.마이삭.하이선(2020)

문 1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②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 ③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 ④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③ 해당하지 않음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설물

-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지하 공간 <하략>

문 18. 재난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존스(David K. C. Jones)는 재난을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
- ② 존스(David K. C. Jones)는 눈사태를 자연재난 중 기상학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
- ③ 아네스(Br. J. Anesth)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
- ④ 아네스(Br. J. Anesth)는 인적 재난을 사고성 재난과 계획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

② 지구물리학적 재난 중 기상학적 재난은 눈 / 눈사태X  
 참고: 산사태는 지구물리학적 재난 중 지형학적 재난으로 봄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 19. 건물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하여 한쪽 벽판이나 지붕 조립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쪽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의 붕괴로서 2차 붕괴에 가장 취약한 건축물의 붕괴 유형은?

- ① 팬케이크형 붕괴
- ② V자형 붕괴
- ③ 경사형 붕괴
- ④ 캔틸레버형 붕괴

④ 캔틸레버형 붕괴에 관한 설명이다.  
**<건물의 붕괴 유형>**  
**① 팬 케이크형 붕괴(pancake)**  
 (잔해를 치우기 전에 부르고, 듣기 방법을 통해 요 구조자 위치 파악)  
 - 내력벽이나 기둥이 온전히 부서지고 높은 바닥이 낮은 바닥위로 단순한 방법으로 붕괴를 일으키며 내려 앉을 때 형성  
 - 빈 공간의 형성은 바닥의 아랫부분과 건물 잔해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② V자형 붕괴**  
 - 무거운 짐이 바닥 중심 가까운곳으로 붕괴되었을 때 형성  
 - 빈공간의 형성은 양쪽으로 지지되고 있는 바닥의 아래나 V자 형태의 양쪽  
 - 삼풍백화점 미화원 탈의실 사례  
**③ 경사형 붕괴 = 기댄 붕괴(Lean-to)**  
 - 1개 이상의 지지벽이나 바닥 조이스트가 부서지거나 한쪽에서 분리 되었을 때  
 - 빈공간의 형성은 지지되고 있는 바닥의 아래와 가장 낮은 곳의 바닥  
**④ 캔틸레버형 붕괴(cant lever)**  
 - 1개 이상의 벽이 무너지고 그 바닥의 다른 쪽 끝은 아직 벽에 붙어 있는 식의 붕괴 형태  
 - 빈공간의 형성은 바닥의 위나 아랫부분  
 -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사건때의 붕괴유형과 유사

**% 사족 :**  
 아무리 업무에 건축업무와 시설물 안전 업무 및 재난대책본부 등의 업무가 있다 해도 소방전술에나 나오는 붕괴의 형태를 기출로 내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문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단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예보·경보 체계 구축·운영
- ㄴ. 응급부담
- ㄷ.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ㄹ.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ㅁ. 재난사태 선포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장 제36조 ~ 제48조

- ㄱ.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ㄴ. 제45조(응급부담)
- ㅁ.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참고>**

-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 제37조 (응급조치)
- 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 제38조의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제39조 (동원명령 등)
- 제40조 (대피명령)
-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 제42조 (강제대피조치)
- 제43조 (통행제한 등)
- 제44조 (응원) - 재난관리자원과 관련 행정응원(행정절차법)과 유사
- 제45조 (응급부담)
- 제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 사족: 이걸 맞추려면 법조문 제목만이라도 다 외워야 할 듯...**

과거 방재안전직 실무경력과 전공자로서 해설을 만들어 봤습니다. 2022년 4월 10일 기준 현행법령이며 일부 예정조문을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강사가 아니라 해설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법령 문제 외의 이론적인 부분의 출처는 인터넷 검색입니다.

피드백은 공기출 댓글로 받으며 현재는 방재안전직 실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니 현업에 관한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시험공부할 때 공기출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재능기부를 할 생각으로 1주일에 1개 정도의 해설은 올릴 예정입니다.

재난관리론, 재난관계법규를 올려 방재안전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을 주고자하며 여유가 되면 공모원 강사들이 강의하지 않고 해설도 달지 않는 과목 위주(법규 검색 정도로 해설을 달 수 있는 과목)로 해설을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